

『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』

후속지원 사업 모집공고

『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』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후속지원 사업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03월 08일

(재)광주테크노파크원장

1

사업개요

- ☐ **사업목적 : 동 사업을 통한 재창업기업의 지속경영 제고 및 경쟁력 강화**
- ☐ **지원대상**
 - 2021년 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 사업화자금지원 수혜기업(20개사) 중
 - 공고일 기준 사업자를 유지하며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한함
- ☐ **지원규모 및 기간**
 - **(지원규모)** 5개사 내외(기업당 최대 15,000천원)
 - ※ 부가가치세 : 전액 기업부담
 - **(지원기간)** 협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외
- ☐ **지원내용 및 방법**
 - **(지원내용)** 同사업지원을 통한 창업아이템 및 이와 유사한(연계된) 제품에 대해 제품 고도화, 사업화, 성능개선 등을 위한 전문기관(업) 외주용역(가공)비 지원 ※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및 재료비 지원 불가

구 분	지 원 내 용
기술지원	· 시제품제작(설계, 시험, 제작) 지원 · 제품고도화(기능 및 공정개선 등) 지원
사업화지원	· 초기 마케팅 지원(홈페이지, 홍보물 제작) 및 광고비 지원 · 기타 마케팅과 관련된 사항 등
시험·인증지원	· 인증(시험분석, 신뢰성/성능인증, 표준화 등) · 지식재산권 (국내외 특허출원등록 등)
디자인지원	· 디자인 개발(개선) 및 브랜드 개발(개선)
자유제안	· 상기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

- **(지원방법)** 지원프로그램 수행 완료 및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외주용역(가공) 기업(관)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

※ 단, 공급 서비스 및 공급기관의 특성상 사업비 선납이 필요한 경우 수혜기업이 외주용역(가공) 기업(관)에게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련사항 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원비 지급 가능

□ 사업 추진절차

단 계	세 부 내 용
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	· POST 후속지원사업 시행 공고 · 수혜기업→ 우편 및 방문(우편제출 권고)
↓	
여건검토	· 적격성(사업 수혜여부, 사업 영위여부) 검토
↓	
선정평가	· 평가위원회 개최(대면평가 및 평가기준 적용)
↓	
협약체결	·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 체결(광주TP↔선정기업)
↓	
사업수행	·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개별 사업수행
↓	
최종보고 및 사업비 지급	· 최종컨설팅 및 수행결과 최종보고/사업비 지급

2

신청방법

□ 신청양식 : (재)광주테크노파크(www.gjtp.or.kr) 및 I-PLEX광주 홈페이지(www.iplexgj.com)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

□ 제출서류 :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

□ 접수 및 문의처

○ (방 법)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○ (접수처) I-PLEX광주 2층 운영본부(동구 동계천로 150)

○ (접수기한) 공고일로부터 ~ 3. 22(화), 17:00

※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

○ (문의처)

기관명	담당자	문의처	이메일
(재)광주테크노파크 (I-PLEX센터)	곽성휘 선임연구원	062-239-9618	rtg1950@gjtp.or.kr
	고동규 전임연구원	062-239-9616	kdk@gjtp.or.kr
	박유정 전임연구원	062-239-9615	uj4047@gjtp.or.kr

3

선정절차 및 기준

□ 선정절차 : 적격성 검토 → 선정(대면)평가

※ 적격성 검토 : 지원 대상 포함여부 등

□ 세부 추진일정(안)

공고	신청서 접수	적격성 검토	선정평가	평가결과 통보	협약체결
3. 8(화)	⇒ 3. 8(화) ~ 3. 22(화)	⇒ 3. 23(수) ~ 3. 24(목)	⇒ 3. 28(월)	⇒ 별도 안내	⇒ 별도 안내

※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선정기준

- 우대가점을 제외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,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'지원 가능 대상'으로 분류하고, 우대가점을 포함한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득점 순으로 '최종 지원 대상' 선정
- 단, 동일 점수일 경우 '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' 높은 과제 우선 선정

□ 평가배점

항 목	평 가 지 표	배 점
지원 필요성(30점)	· 지원 후 사업(기술개발 및 사업화) 진척도	10
	· 同사업 수혜後 타기관 지원사업으로 연결성 등	10
	· 후속지원 필요성 및 CEO의지 등	10
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(50점)	· 既지원 기술 및 제품과의 연계성	10
	· 기존 기술 및 제품과의 차별성/목표 구체성 등	20
	· 기술개발 계획 및 사업화 전략 실현가능성 등	20
사업비 적절성 및 기대효과(20점)	·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	10
	· 성과목표 명확성 및 기대효과	10
합계		100
우대가점(5점)	· Co2 저감기술(제품), 재생에너지 기술(제품) 등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관련 과제 1점	
	· 지역 내 공급기업 연계지원 과제 1점	
	· 기업 자부담율 20% 이상 적용 시 3점	

$$\text{※ 기업 자부담율(\%)} = \frac{\text{자부담금액}}{\text{총 소요비용}} \\ (\text{공급가액 기준})$$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)
- 기업별 최대 지원액을 감안하여 단일 지원프로그램 또는 복수 지원 프로그램 신청 가능
- 지원 프로그램별 전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소요비용 및 기업 자부담율 산출 :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
- 선정평가 결과 신청지원금 축소에 따른 기업 자부담금 자동 발생 또는 증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우대가점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
- ※ 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과대 산정금지
-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금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
-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·관리·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

-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
-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(※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)
-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'실패'(또는 이에 준하는 '미흡'시) 판정 기업
-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

-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
-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 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

□ **지원제외 대상(공고일 기준)**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-32호(2018. 1. 22.) ‘지역산업육성사업
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’ 적용 : <별표 3>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
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

- 붙임 1. 지원신청서 양식
2.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